



제8호 2003년12월20일 발행인 김 상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 1급 그린퇴비의 탄생

올해 우리업계의 가장 큰 변화라면 1급 그린퇴비의 탄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퇴비의 등급화는 계속 이야기되어왔다. 등급화 방법에서는 제품의 등급화를 나눌 것인가 원자재별로 등급을 나눌 것인가를 놓고 만만치 않게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결국 공정규격에 기준치를 강화한 제품등급으로서 지난 2002년 12월 31일 농촌진흥청 고시로 공포되어 1월 31일부터 시행된 그린퇴비의 탄생으로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내년부터 일반 퇴비의 50% 수분규제와 함께 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올 일년간 약 40여개의 업체가 1급 그린퇴비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등록하리라 예상된다. 이를 등록한 대다수의 업체들은 품목명칭에서 말해주듯 명실상부한 1급 퇴비로서 기존의 퇴비제품이 갖는 이미지와 차별화를 기대하고 있다.

## 일반퇴비와의 차별화

특히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에 쓰여 질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화학비료를 대신 할 만큼 비효가 높은 상품 개발에도 이 1급 그린퇴비가 대신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1급 그린퇴비가 생성되기까지 그 과정이야 어떠한 이 일을 우리들의 일로 받아들여 이미 정해진 규격이라면 모두가 힘을 합쳐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분위기인 것이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 기회에 퇴비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퇴비의 생산업등록을 하고 제조 활동을 하는 업체 중 많은 수가 이 1급 그린퇴비의 등록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축산 농가의 폐수 처리 문제로 축산 분뇨의 퇴비화 처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꼭 생산 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농가(축사)시설 중 퇴비장 용도의 건축물만 확보하면 공업배치법상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비 생산업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축물 용도가 생산 시설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업 등록을 할 수 없게 관련법이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퇴비 생산업체가 건물 용도를 생산 시설용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린퇴비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도 1급 그린퇴비 등록을 하려면 기존 퇴비의 생산시설 외에 별도의 생산라인 및 원·부자재 창고 등을 확보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이러하듯 그린퇴비와 일반퇴비는 관련 법규상 완전히 다른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 구매자로서의 농협입장

그런데 정부보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는 1급 그린퇴비나 일반 퇴비 중 한 품목만 이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품목과는 관계없이 업체의 납품 지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설명으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의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납품 지정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생산하는 품목 중 한 개 라도 행정 처분을 받으면

그 품목뿐만이 아니라 업체 자체의 행정 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비료관리법에는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음).

1급 그린퇴비를 통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현재 분위기가 자칫 위축되어 업체들로부터 외면당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지는 부분이다. 덧붙여 1급 그린퇴비에는 미달되더라도 일반 퇴비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퇴비의 생산 활동만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1급 그린퇴비의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일이 1급 그린퇴비와 일반 퇴비를 확실하게 구분하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1급 그린퇴비는 좋은 퇴비, 일반퇴비는 그렇지 못한 퇴비로 규정지어 질 때, 퇴비 비료 자체의 기준이 흔들릴 수도 있다. 더욱이 그린 퇴비의 공규격상 순수농가 부산물이나 폐기물만 가지고는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볼 때 그래서 모두가 그러한 원자재를 기피하고 그린퇴비로만 치중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 **퇴비는 재활용품으로 그냥두면 폐기물이다**

퇴비의 등급화는 반드시 기존의 퇴비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상대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처리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더욱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행정 처분으로 업체의 활동을 제재한다고 해도 그 업체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퇴비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영업정지를 당한다 해도 축분을 주 원료로 하는 공장 입장에는 밀려드는 축분 처리를 위해 공장 시설을 가동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퇴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폐기처분 하는 등 다른 처리를 할 수 없는 물질이다. 비록 행정 처분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다시 규격 내 제품으

로 만들어져(규격의 상당부분은 별도의 처리 없이 일정 기간만 경과해도 개선된다)유통되기 마련 인 것이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무허가 제품 및 불량비료의 유통 단속에 명분을 주어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 알림**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이 12월11일자로 공포되어 내년 6월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골자는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간이 경과한 비료의 유통금지사항과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였을 때도 생산업자가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보증표시를 표시한 보증표를 교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이다.

#### **산물판매도 보증표를 교부해야한다**

전체적인 비료관리법 14조 ①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①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및 비료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성분 보증량 등의 보증표시를 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난 3월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비료 관리법은 생산업자 에게만 적용되던 범위를 판매자와 무상공급자 까지 확대(3월19일자)적용시켰고 이어 포장되지 않은 산물유통도 공정규격에 따른 보증표를 교부하여 유통 또는 공급하게끔 강화되었다. 이제 무허가 불량비료의 유통단속에 그나마 도움이 되리라 본다.

### 법이 없는 분야

하지만 아직도 비료관리법에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 비료는 분명 국내 표준산업 분류상 독립 분류된 품목인데 이의 질서를 유지시켜줄 관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계속 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렇게 비료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백이 생긴 부분은 환경부 관련법에 의존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부분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여 환경부에 질의 답변하였던 사항 중 우리업체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연재로 실을 예정이다.

### 환경부 질의 사례집

| 제목 | 야적된 상태의 퇴비와 폐기물의 차이  |
|----|--|
| 질문 | 1. 농림부산물, 수산부산물, 축분, 음식찌꺼기, 동.식물성잔재물, 사전 분석검투후 사용가능한 폐수처리오니등 사업장 폐기물과 타 원료를 혼합발효과정을 거쳐 퇴비화한 것을 포장하지 않고 산물상태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답변 | ○ 혼합발효 등 퇴비화 과정을 거친 것이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에 의한 퇴비 제품기준에 적합하고 악취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포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기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보관시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이 없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끝. |

| 제목 | 마을옆의 퇴비공장 악취규제 원칙여부  |
|----|--|
|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마을옆에 퇴비공장이 있는데(직선 300m)폐기물로 퇴비를 만들다 우리시에 적발되어 두번이나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아직도 상호만 바꾸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한 악취가 나서 더 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악취의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일반 퇴비가 부숙될때 나는 냄새가 아니라 산업폐기물이 썩는 냄새인데 말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

|    |   |
|----|---|
| 질문 | <p>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마을쪽으로 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음대로 문을 열수도 없습니다. 산업폐기물로 퇴비를 만들면 토양오염은 어떻게 합니까?</p> <p>업주가 이웃마을사람이라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는지 우리지방에서는 퇴비를 넣지 못하게 한다는군요.</p> <p>악취를 단속하는 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

|    |   |
|----|---|
| 답변 | <p>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생활악취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질의하신 업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9 제4호 규정에 의거 생활 악취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p>2. 생활악취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과 함께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게되고, 동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p> <p>3. 따라서, 인근 업체로부터 악취피해를 받고 있다면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단의 경우 환경관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에 따라 단속기관에서 적법여부를 조사 후 위법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p> |
|----|---|

| 제목 | 농가에서만든 퇴비판매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br>문의사항에 대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br>1. 축산폐수배출시설(소, 돼지사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사에서 자체사육 시설에서 발생된 축분을 일정기간동안 숙성시킨것을 퇴비로 판매할수 있는지 여부.<br>2. 퇴비보관창고 설치하고 퇴비소매업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퇴비사에 보관된 퇴비를 매수하여 하우스재배 농가에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과정에서 퇴비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보관창고 옆으로 스며나와 농업용수로에 흘러들어가 농업용수로 오염시킨경우에 환경관련법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            |      |          |
|--|------------|------|----------|
| 회신일자   | 2003-08-27 | 전화번호 | 504-9255 |
| 담당과  | 생활오수과      | 담당자  | 김영중      |
| <p>- 퇴비의 판매 등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을 관장하는 농림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0조관련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의하여 저장시설은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는 동법 제56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p> <p>- 또한 동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할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            |      |          |

대학기숙사가 위치해 민원은 더욱 극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이오메카의 선병문화장남을 만나 냄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비료 또한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아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생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문제에 확실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본 협회 특별회원사로 가입하게 되어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업체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선병문화장남은 오래전부터 농업 기술자협회에도 몸담고 계시면서 농촌운동에 적극 활동한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연락처: 봉동영농조합 063-263-6705, 이동전화 019-528-5474)

### 농협비료 유통단속 결과

### 회원사 소개

새로 입회한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상호: (주)바이오메카

대표: 선호산

주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중부대학창업보육센터

연락처: 선호산 019-528-5474

이번에 특별회원으로 입회한 (주)바이오메카는 미생물제제 전문생산업체로서 다년간 제품 판매실적이 있으며 특히 3~4년전 부터는 우리 협회 감사이신 봉동영농조합 소병운 감사님과 협력하여 봉동영농조합 퇴비공장내 악취문제를 말끔히 처리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위치한 봉동영농조합은 1994년도 공동퇴비제조장으로 시작 발효시설은 통풍식 발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원료로는 계분과 인근 도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로서 동물성잔재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원료가 이렇다보니 제품의 효능은 말 할수없이 좋으나 발효중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공장 가동 쯤폐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직선거리 수십m 안 밖에

| 비종 | 업체명    | 소재지   | 제조일자    | 기준미달내역         |       |      |        | 제재기준    |       |
|----|--------|-------|---------|----------------|-------|------|--------|---------|-------|
| 퇴비 | 형제영농조합 | 경남합천  | 2003.09 | 유효성분 및 기타규격(%) |       |      |        | 경고      |       |
|    |        |       |         | 성분명            | 유기물   | 염분   | 수분     |         |       |
|    |        |       |         | 보중             | 20    | 1이하  | 50이하   |         |       |
|    |        |       |         | 분석             | 40.69 | 1.08 | 28.51  |         |       |
| 미달 | -      | 8.00  | -       |                |       |      |        |         |       |
| 퇴비 | 주)장춘   | 경남마산  | 2003.09 | 유해성분(mg/kg, %) |       |      |        | 영업정지 3월 |       |
|    |        |       |         | 성분명            | 카드늄   | 수은   | 납      |         | 니켈    |
|    |        |       |         | 보중             | 5     | 2    | 150    |         | 50    |
|    |        |       |         | 분석             | 9.61  | 2.48 | 198.23 |         | 66.08 |
| 미달 | 99.22  | 24.00 | 32.15   | 32.15          |       |      |        |         |       |

## 送舊迎新



2004년은 甲申年 원숭이 해입니다. 새해에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